

대전지방법원 2024. 10. 16 선고 2023가단229954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고신용보증기금

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욱

피고A

변론 종결2024. 7. 17.

판결 선고2024. 10. 16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19,402,308원과 그중 19,402,212원에 대하여 2023. 6. 1.부터 2023. 8. 8.까지는 연 8%의,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(피고 B에 대하여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).

2. 적용 법조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, 제150조 제3항, 제1항(자백간주에 의한 판결)

판사정도영

별지